

예산총칙

2025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25,200,000	33,756,000
일반회계	1,059,948,792	31,798,464
특별회계	65,251,208	1,957,536
공기업특별회계	29,370,569	881,11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9,370,569	881,117
기타특별회계	35,880,639	1,076,419
의료급여기금	1,297,077	38,912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10,000	300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516,614	15,49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80,900	2,427
치수사업	790,878	23,726
수질개선	33,185,170	995,55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없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413,247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7,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의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